

부천시의회의회장(류재구)불신임안

의안 번호	제 165 호
의결 연월일	2003. 7. 14 (제105회)

제안년월일 : 2003년 7월 14일

제안자 : 부천시의회의원
안익순 등 19인

1. 주 문

부천시의회의회장(류재구)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신임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부천시의회의회장(류재구)은 의전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,
- 부산영화제 여비유용문제, 향축세트 장례식장 비치, 방문기념품 외 부유출 및 명함 불특정 다수인 배포 등은 동법 동조 제2항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,
- 지방자치법 제79조 내지 제80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부천시의회의회 명예를 실추시켰고,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49조